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42
----------	-------

발의연월일 : 2026. 9. 9.

발 의 자 : 이달희 · 김정재 · 김성원
김종양 · 주호영 · 김기웅
박충권 · 백종현 · 서천호
이소희 · 이만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가입자등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한 부담금을 합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고 있고,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하여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가입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외국인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고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하여 이를 반납하고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주요국은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본인 기여분에 한정하여 지급하거나 반환일시금의 반납이나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따라 가입기간을 산입하여 주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우리와 차이가 있음.

이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해서는 그 본국 법이 정하는 바에 상응하여 반환일시금의 산정과 반납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되 외국인의 본국 법이 이에 상응하는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거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추후 납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주의에 따른 제도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제5항·제6항 신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 가입자등에게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시금에서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부담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7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 가입자등에게 지급하는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본인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대한민국 국민이 지급받은 일시금을 반납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그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7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92조의 규정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외국인 가입자등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제92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한 기간은 제외한다)이 5년 이상인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2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반납금의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 가입자등에게 제77조 및 제78 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u>1.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제77조에 따른 반환일 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말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시 금에서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부담금에 상응하는 금액 을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경우: 제77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 가 입자등에게 지급하는 반환일 시금의 액수는 본인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u>

<u><신 설></u> <u>⑤ (생 략)</u>	<u>다.</u> <u>2. 대한민국 국민이 지급받은 일시금을 반납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그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7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u>⑥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1.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92조의 규정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u> <u>2. 외국인 가입자등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제92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한 기간은 제외한다)이 5년 이상인 경우</u> <u>⑦ (현행 제5항과 같음)</u>
---	---